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식업권 공유지분의 이전·분할 동의 요청 거부 금지
및 지분 이전·분할 관련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912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양식업권 공유지분의 이전·분할 동의 요청 거부 금지 및 지분 이전·분할 관련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2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

3. 회 부 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라 함)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양식업권 공유지분의 이전·분할 동의 요청 거부 금지 및 지분 이전·분할 관련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분 이전·분할 관련 사항에 대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공유자의 동의)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3조(공유자의 동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 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분 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지분의 이전·분할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⑤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 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식업 권 지분 이전·분할에 대한 동의</u>

	<u>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1) 양식업권 공유지분의 이전·분할 동의 요청 거부 금지

- 양식업권¹⁾이란 현행법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거나, 양식업권을 이전·분할받은 자가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현행법에서는 양식업권의 성질을 민법상 물권(物權)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업권의 공동지분 처분²⁾과 관련해서는 「민사집

1)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①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제30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식업권을 취득한다.

② 양식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33조(공유자의 동의) ①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다른 공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행법」 제264조³⁾에 따른 매각(경매)의 경우 외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공유물건의 지분 처분 등의 규정⁴⁾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공동소유에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비해⁵⁾,

현행법은 양식업권의 지분의 처분 및 담보 제공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음.

양식업권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일정한 양식장에서 특정한 종류의 양식업을 독점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수면에 대한 직접 지배성, 배타성, 절대성 등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져 다른 일반 재산권과 같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양도 및 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공익상 제한을 받을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 공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4)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5) 「민법」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공유물 자체의 처분 및 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함

수 있는 점에서 「민법」에 따른 공유물건의 지분 관련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⁶⁾

□ 개정안은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일부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 지분의 이전·분할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담보설정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 개인·협업 면허 공유자 현황(패류·어류등·복합 양식업) >

구분	면허 현황		공유자 현황(단위: 건)						
	합계	개인·협업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패류양식업	5,214건	2,252건	298 (13.2%)	540 (24.0%)	460 (20.4%)	252 (11.2%)	114 (5.1%)	71 (3.2%)	517 (23.0%)
어류등양식업	1,100건	724건	14 (1.9%)	167 (23.1%)	100 (13.8%)	62 (8.6%)	46 (6.4%)	27 (3.7%)	273 (37.7%)
복합양식업	1,194건	316건	89 (28.2%)	58 (18.4%)	71 (22.5%)	32 (10.1%)	16 (5.1%)	12 (3.8%)	38 (12.0%)

자료 : 해양수산부

□ 현행법은 양식업권의 이전·분할·변경 및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제30조, 제32조)하고, 공유지분 처분에 있어서도 다른 공유자

6) 김인유, 「양식업권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p.82

의 동의를 필요조건(제33조)으로 하는 등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⁷⁾

특히, 일반적인 재산권(토지 소유권)의 공유와 달리, 양식업은 상대방의 자산, 신용, 기술까지도 공유관계에서 중요시하고, 공유자 일

7)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양식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분할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2.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3.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공유자의 동의) ①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유자의 주소나居所(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다른 공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 공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방이 임의로 지분을 처분하여 전혀 새로운 사람이 공유관계에 들어 오게 되면 양식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음.⁸⁾

공유자의 지분 처분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공유자 사이의 개별적 재산권 보장과 현행법이 공유지분 처분을 제한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요청되고, 지분 처분 거부사유인 재산상 손해 등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으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일부 공유자의 비협조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생기는 어업인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양식업권 지분의 이전·분할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과도한 이전·분할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식업권 공유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경남 하동군 수협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자의 재산 활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충남(태안군) 및 전북(부안군)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공유자와 해당 지분을 인수한 제3자의 원활한 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 양식업권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8) 김인유, 「양식업권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p.88

2) 양식업권 지분 이전·분할 관련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 현재, 양식업권의 지분 관련 분쟁 발생시 개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양식업권의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식업권 지분 이전·분할에 대한 동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분쟁 조정 관련 절차를 사전적으로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수산조정위원회⁹⁾는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수산조정위원회의 법적성격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산조정위원회 현황 >

□ 수산조정위원회 현황

- (위원회 성격) 자문위원회
- (목적)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법적 근거) 「수산업법」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 (설치 연도) 1963년(「수산업법」에 수산심의위원회 설치 조문 신설)
- (위원장/위원수) 해양수산부 차관/19명
- (조정 현황) '23년 기준 연 3~4회(대면 1회, 서면 2~3회)
- (시·도, 시·군 위원회/어업조정위원회) 지자체별/동·서·남해

자료 : 해양수산부

9) 「수산업법」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 수산조정위원회 기능 >

□ 수산조정위원회 기능

- ① 어업별 분쟁의 조정
 - ②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③ 기본계획의 심의
 - ④ 선복량 제한의 심의
 - ⑤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 ⑦ 그 밖에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수산업법) 시·도 간 조업수역의 조정, 어구 규모 제한을 별도 적용,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도 연안자원관리 승인신청 등
- (어장관리법)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장관리해역 지정
- (양식산업발전법)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어촌계 등 면허 특례 적용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직권감척 어업, 대상자 지정
- (수산자원관리법)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어업자협약 승인, 총허용어획량 설정

자료 : 해양수산부

□ 수산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¹⁰⁾로, 「수산업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양식업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¹¹⁾도 부시장·부군수 등 관계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시·군·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공무원과 관할 지구별 수협 조합장 및 어촌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권 분쟁 조정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법적성격과 기능을 고려할 때,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이 우려되며,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실효성은 낮으나 행정수요만 증가시키고, 조정 방향 및 수산조정위원회 구성의 적합성 등에 관한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는 수산조정위원회는 공익적 행정 분쟁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나, 양식장 이전·분할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이며, 재산권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19

하고, 부위원장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후계어업경영인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참고 1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치 결과

구분	기관	검토의견
수용	하동군 수협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정상적인 담보제공과 금융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권리자의 재산 활용성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수용 불가 (삭제)	충남 (태안군)	- 양식업권 지분은 '공유물'과 같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해야 함(민법 제264조) - 또한, 양식업권 지분 이전·분할 등과 같은 재산권 문제를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전북 (부안군)	공유 양식업권은 공유자들의 상호 협업을 전제로 하나의 양식업권을 처분한 것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공유자와 해당 지분을 인수한 제3자의 원활한 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해당 양식업권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기대하기 곤란함
	경남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는 공익적 행정 분쟁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나, 양식장 이전·분할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이며, 재산권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분쟁은 민사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함
	경남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는 공익을 고려하여 어업인 대다수를 위한 어업 분쟁 조정에 취지와 역할이 있으며, 개인간 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
	경남 (거제시)	수산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경우 행정수요 증가 및 지연, 또다른 갈등 발생 소지가 있음

□ 수산조정위원회 현황

- (위원회 성격) 자문위원회
- (목적)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법적 근거) 「수산업법」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 (설치 연도) 1963년(「수산업법」에 수산심의위원회 설치 조문 신설)
- (위원장/위원수) 해양수산부 차관/19명
- (조정 현황) '23년 기준 연 3~4회(대면 1회, 서면 2~3회)
- (시·도, 시·군 위원회/어업조정위원회) 지자체별/동·서·남해

□ 수산조정위원회 기능

- ① 어업별 분쟁의 조정
- ②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③ 기본계획의 심의
- ④ 선복량 제한의 심의
- ⑤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 ⑦ 그 밖에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수산업법) 시·도 간 조업수역의 조정, 어구 규모 제한을 별도 적용,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도 연안자원관리 승인신청 등
 - (어장관리법)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장관리해역 지정
 - (양식산업발전법)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어촌계 등 면허 특례 적용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직권감척 어업, 대상자 지정
 - (수산자원관리법)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어업자협약 승인, 총허용어획량 설정

참고 3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 (구성)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위원장)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자
 - (부위원장) 시·군·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 사람
 - (그 밖의 위원)
 - ① 관할 지구별수협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 ②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③ 후계어업경영인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④ 어촌계장 중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 ⑤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⑥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참고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법적 구분

□ 위원회 개념

-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1항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함

□ 법적 구분

-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
 -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통칙 제21조*)
 - * 제21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회)** 행정기관의 업무를 자문하는 부속기관(통칙 제20조*)
 -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분>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성 격	▶ 합의제 행정기관 ▶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권한 행사	▶ 행정기관의 부속기관 ▶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
기 능	▶ 준사법적·준입법적 기능 수행	▶ 행정기관에 대한 자문기능 * 단순자문, 심의·조정, 의결 등
의사결정	▶ <u>직접 의사 결정</u> ▶ 의사결정 대외적 표명, <u>집행 권한 有</u>	▶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 의사결정 대외적 표명, <u>집행 권한 無</u>
구속력	▶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 없음 ▶ 다만, 의결기관인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행정기관을 기속할 수 있음
사무기구 운영인력	▶ 필요시 시행령(직제 등)에 의한 행정조직·정원이 있는 사무국 설치 가능	▶ 원칙적으로 사무국 설치 불가(예외 있음) * 대부분 기존의 행정인력 활용

참고 5

양식업 면허 현황 ('24년말 기준)

□ 양식업 면허 현황 : 10,063건, 162,862ha(전년 대비 72건 ↑, 1,388ha ↑)

- (지역별) 면허 건수는 전남이 5,501건(5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은 전남 121,725ha(74.8%), 경남 11,685ha(7.2%) 순으로 나타남

구분	전남	경남	충남	기타
면허건수 (면허면적)	5,501건 (121,725ha)	2,340건 (11,685ha)	733건 (9,080ha)	1,486건 (20,312ha)

- (품목별) 면허 건수는 패류 5,214건(51.8%), 해조류 2,228건(22.1%) 순, 면적은 해조류 91,908ha(56.5%), 패류 43,538ha(26.7%) 순으로 나타남

구분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기타
면허건수 (면허면적)	5,214건 (43,538ha)	2,228건 (91,908ha)	1,194건 (13,267ha)	1,424건 (14,089ha)

- (소유자별) 면허 건수는 어촌계가 6,160건(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도 어촌계가 126,985ha(7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구분	어촌계	개인·협업	수협	영어조합
면허건수 (면허면적)	6,160건 (126,985ha)	3,436건 (21,404ha)	315건 (12,949ha)	149건 (1,464ha)

□ 개인·협업 면허 공유자 현황

구분	면허 현황		공유자 현황(단위: 건)						
	합계	개인·협업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패류양식업	5,214건	2,252건	298 (13.2%)	540 (24.0%)	460 (20.4%)	252 (11.2%)	114 (5.1%)	71 (3.2%)	517 (23.0%)
어류등양식업	1,100건	724건	14 (1.9%)	167 (23.1%)	100 (13.8%)	62 (8.6%)	46 (6.4%)	27 (3.7%)	273 (37.7%)
복합양식업	1,194건	316건	89 (28.2%)	58 (18.4%)	71 (22.5%)	32 (10.1%)	16 (5.1%)	12 (3.8%)	38 (12.0%)

*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공유자 현황 조사 중